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수옥 의원)

의안 번호	제 2557호
----------	---------

발의년월일 : 2021년 1월 21일
발 의 자 : 이수옥, 이재식 의원
찬 성 자 : 박종호, 임정옥, 최재란,
이인락, 유영주, 윤인숙,
나상희, 정순희 의원 (8명)

1. 제안이유

위임 조례로써 상위 법령의 용어정의와 동일한 내용 등은 그대로 적용하고,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함과 동시에 위원회의 규정을 정비하고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의 용어정의가 자치법규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중복되는 정의는 생략하고 문장을 정비함(안 제2조).
- 나. 자치법규에서 사업자나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무부과를 한 조항이 있어 이를 선언적 내용으로 수정함(안 제6조).

- 다.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로 수정함(안 제9조).
- 라.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간사, 위원의 수당 등으로 정비함(안 제10조 ~ 제14조).
- 마. 그 밖에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조문을 정비함(안 제12조 ~ 제17조).
- 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과 법 시행령을 인용하여 조문을 신설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 제2조, 제5조~제7조, 제9조~제11조, 제50조제5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라. 기타

1) 개정안 : 별 첨

2) 조례안 예고 : 2021. 1. 29. ~ 2021. 2.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대응하면서”를 “대응하고”로,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을 “향상시키는”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의 제목“(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추진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탄소 녹색성장이 다음”을 “다음”으로, “추진되도록 해야”를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추진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를 “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추진한다.”를 각각 “추진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구축한다.”를 “구축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개편한다.”를 “개편할 것”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협력”을 “협력하도록 노력”으로 한다.

- ① 사업자는 법 제6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법 제7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청장은”을 “이 조례는”으로, “관하여는”을 “관하여”로,
“우선하여 이 조례를”을 “우선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목적과 기본
원칙에 맞도록”을 “목적에 맞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녹색성장관련”
을 “녹색성장 관련”으로,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
록 해야”를 “해당 법령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3조에 따라 수립하
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맞게 수립·시행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후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
과 연계하여”를 “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수립되는 녹색성장국가
전략, 중앙추진계획 및 서울특별시추진계획과 연계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
4호 중 “미래상 및 기대효”를 “기대효”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녹색성장위원회의 설
치)”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를 제19조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녹색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청소행정과장과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중전의 제10조)제6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

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0조)의 제목“(회의)”를“(위원회 운영)”으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1조)의 제목“(위원회 회의 실비 보상 등)”을“(위원의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지급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2조)제1항 중 “지속가능”을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으로,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녹색경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3항) 중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를 “녹색기술을 활용하거나 녹색산업을 운영하는 자에게”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3조)제1항 중 “구의 공공건축물”을 “구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로, “역할을 수행하도록”을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으로, “점검、”를 “점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물”을 “공공건축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를 “신·재생에너지시설을 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은 삭제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자원을 행정정보화를 통하여 통합·관리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친환경 사무실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4조)제1항 중 “조치를 강구”를 “대책을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사용시설별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19조(중전의 제1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u>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p> <p>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 변화와 환경 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p> <p>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p>	<p>제1조(목적) ----- ----- ----- <u>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 <u>대응하고 ----- 향상시키</u> <u>는 -----</u>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p>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을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 (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1.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2.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

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3. “자원순환”이란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탄소 녹색성장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1. 구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문제의 해결, 녹색기업 및 제품의 활성화,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사회, 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추진의 기본원칙) -----
----- 다음 -----
-----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해야 -----.

1. -----

--- 할 것
2. -----

----- 추진할 것
3. -----

----- 추진할 것

4.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분야와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건물과 교통,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4. -----

----- 구축할 것

5. -----

----- 개편할 것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구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 경영을 선도해야 하며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시행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6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삭제〉

고 협력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학교·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 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② 구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구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 변화, 에너지·자원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추진계획과

② -----

----- 협력하도록 노력-----.

제6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법 제7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 관하여 ----- 우선하여 -----.

② -----
----- 목적에 맞게 -----.

③ ----- 녹색성장 관련 ----- 해당 법령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8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1. (생략)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 계획과 연계하여 구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생략)
4.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6. (생략)

제9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

제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맞게 수립·시행해야 -
--.

제8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

다음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수립되는 녹색성장국가전략, 중앙추진계획 및 서울특별시추진계획과 연계된 -----
3. (현행과 같음)
4. ----- 기대효과-----

5. 6. (현행과 같음)

제9조(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구청장

- 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환경녹지국장, 녹색환경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녹색환경과 담당주사가 된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녹색환경과장, 공원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과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

제10조(회의)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

-----.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제11조(위원회 회의 실비 보상 등) 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녹색경제 구현 등) ① 구청장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
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
써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
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해야 한
다.

② 구청장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
고 성장 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
을 발굴, 육성하는 등 녹색경제, 녹색
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
다.

③ 구청장은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
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건축물이 녹색
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수당 등) -----

----- 지급하지 않는
다.

제15조(녹색경제 구현 등) ① -----

----- 지역경
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 ---
----- 녹색경제-----.

〈삭제〉

② ----- 녹색기술을 활용하거나 녹
색산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
-----.

제16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 구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
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

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 ,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물과 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 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자원 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조성에 노력한다.

④ 구청장은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 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제14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구청장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 점검 , -----
-----.

② ----- 공공건축물-----

----- 신, 재생에너지시설을 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자원을 행정정보화를 통하여 통합, 관리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친환경 사무실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삭 제>

제17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

----- 대책을 마련-----.

②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사용시설별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신 설>

제1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15조(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 수립)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삭 제>

제16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제19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삭제〉

【관계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

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1.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12.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3. “자원순환”이란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자원순환을 말한다.
1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5. “에너지 자립도”란 국내 총소비에너지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개발(지분 취득을 포함한다)한 에너지량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

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국민은 스스로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① 정부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녹색성장국가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녹색성장국가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녹색경제 체제의 구현에 관한 사항
2.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대응 정책, 에너지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4. 녹색생활, 제51조에 따른 녹색국토,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 등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원조달, 조세·금융,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정부는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녹색

성장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성장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